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10.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5.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인철 의원)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u>자신이 구입한 가격을</u>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u>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u> ----- ----- ----- ----- -----.
② 누구든지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입장권등을</u>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 ----- ----- -----.
<신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 2. (생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2. (생략) <신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생략) <신설>	<u>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9조의2(벌칙) -----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u>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가중처벌</u>) <u>상습적으로 제4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u>
---	---

다. 검토의견

- 「경범죄 처벌법」¹⁾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현행법	개정안
금지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제6조의2②)	방법 무관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제6조의2②)
		기준가 변경: ‘구입가격’→‘판매정가’ (제6조의2①)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기타	-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④)
		상습범 1/2까지 가중처벌 (제49조의3)

-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을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경기장 등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 판매 (제3조제2항제4호)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철도 사업법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평창 올림픽법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제1항)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제1호)
체육 시설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국민체육 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2024. 9. 27.)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부정판매 상습범 가중처벌(안 제49조의3)과 관련하여, ‘부정판매 행위’는 정의(안 제6조의2) 그 자체로 ‘상습 또는 영업’을 포함하는 개념인바, 규정 간 중복의 소지가 있음.

- 문체부는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³⁾
-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3) (문체부 수정안)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 등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사항

없 음.